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현아 의원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촉진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상생과 호혜, 연대의 기본원리라는  
사회적경제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공공구매 전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  
수준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수치입니다.

개정안은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 구매 비율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5 이내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민간에도 널리 확산되어 사회적경제 기반의  
확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